

산학협력단 장려금 지원 지침

□ 제정 : 2018. 3. 1.

□ 개정 : 2020. 3.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과제와 교육운영의 유치를 장려하고 연구·교육운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려금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당해 학년도 연구과제와 교육운영의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 지급한다.

제3조(장려금 구분) 장려금은 ‘연구장려금’ 및 ‘교육운영장려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연구장려금) ① ‘연구장려금’은 간접비를 징수한 외부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간접비 징수액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운영장려금) ‘교육운영장려금’은 외부위탁교육운영에 대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교육운영 총사업비의 최대 5%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시기) 본대학 교원업적평가 기간에 준하여 연 1회 계좌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
3.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에서 정한 간접비 산정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간접비를 징수한 경우
4.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재원) 장려금의 재원은 간접비 및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급한 장려금은 이 지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